

#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향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518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1월 23일

발 의 자: 김지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종길,  
김혜영, 도문열, 박상혁,  
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 
심미경, 유만희, 윤기섭,  
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  
정지웅, 최윤희, 최호정  
의원(1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최근 소비 트렌드의 급변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.
- 특히, 대형마트는 그 동안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 제고와 지역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했으나, 영업 부진으로 폐업이 이어지면서 지역상권 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최근 개최된 ‘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’(2024.1.22.)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‘공휴일 중 지정 원칙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을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,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친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체에서 동일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음(제12조제1항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유통산업발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시 전체가 동일하도록”을 “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”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(온라인 배송 제외)
2. 월 2회의 의무휴업일(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)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영업시간 등의 제한)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<u>시 전체가 동일하도록</u>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 | 제12조(영업시간 등의 제한) ① 시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형유통기업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때 <u>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</u>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 |
| 1.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( <u>온라인 배송 제외</u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. 월 2회의 의무휴업일. <u>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,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             | 2. 월 2회의 의무휴업일( <u>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지정함</u>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 배송업의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고,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지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 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    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